

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[별지 제4호의2서식]

[] ① 양수신고서
사물위치정보사업 [] ② 상속신고서
 [] ③ 합병·분할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①양도, ② 피 상 속, ③ 피 합병(분 할) 또는 소 멸 법인	상 호(또는 명칭)		
	성 명(대표자)		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	
	홈페이지주소	담당자	전화번호
	사망일자	※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	E-Mail

①양수, ②상속, ③ 합병(분할)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	상 호(또는 명칭)			
	성 명(대표자)		본적지	※ 상속의 경우만 기재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		
	홈페이지주소	담당자	전화번호	
	피상속인과의 관계	※ 상속의 경우만 기재	E-Mail	

양수 및 상속 또는
합병(분할)내용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①양수시	1.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1부. 2.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. 3.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4.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
	②상속시	1.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	③합병·분할시	1. 합병·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. 2.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. 3.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4.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①양수시	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[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]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	②상속시	해당 없음
	③합병·분할시	합병·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